Ⅱ IFRS17 주요 내용과 설문 조사

1. 도입 경과

가. IFRS17 도입 과정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1997년부터 작성을 시작하여 2020년 6월에 최종 기준서가 발간되었다. 국내에서는 2021년 6월에 시행일을 확정한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3]되었다. IFRS17은 기준서 작성부터 시행까지 25년간 진행된 초장기프로젝트이며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에 해당하는 IFRS4는 각국의 회계관행을 허용하나 2단계인 IFRS17은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FRS4를 대체하는 IFRS17 제정이 추진되었다.

〈표 Ⅱ-1〉 IFRS4와 IFRS17 비교

IFRS4	IFRS17
• 각국의 회계관행 허용 -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으로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알려주기 곤란 - 수익인식 시 현금주의 적용으로 일반회계원칙과 충돌 - 보험이익과 투자이익 원천 파악이 어려움 - 보험산업의 특수한 회계처리 인정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 최근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으로 보험회사 현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공시 - 수익인식은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일반회계원칙에 부합 - 보험 및 투자이익의 원천을 파악하기 용이 - 다른 금융산업과 비교가능성 증가

자료: 금융감독원(2021a)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12. 6), “보험회사의 시가평가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新제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설서 마련, 업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제도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은 1999년 12월 이슈보고서 발간, 2001년 11월 초안을 공개하였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2단계에 걸쳐 기준서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단계 기준서가 2004년 3월 발표되었다.[4)]

국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2022년까지는 1단계인 IFRS4를 적용했다. IFRS4는 각국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대부분 인정하나 일부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부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 상품을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약은 금융상품 회계기준(IAS39)를 적용한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으로 적립하며 평가시점 기초율로 보험부채를 재평가하는 부채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 LAT)를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단계인 IFRS17에서 본격적으로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수익인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IFRS17은 시행일을 확정하기까지 2번이나 시행시기가 연기되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IFRS17 기준서를 발표하고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명시하였으나, 2018년 11월 회의에서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일을 1년 연기한 2022년 1월 1일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회의에서 시행일을 추가로 1년 연기하여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5)]

최초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한 것은 ① 소규모 보험회사의 외부 자원 활용 제한 및 소프트웨어 전달 지연 ② 다양한 보험계약에 대한 IFRS17 적용 및 시행 중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 해결 ③ 감독목적 보고 및 세제 요구사항 검토 ④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 준비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후에도 IFRS17은 국제적으로 처음 적용하는 보험회계 기준이며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전 세계 동시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2023년으로 시행 시기가 추가적으로 연기되었다.

국내는 2021년 4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을 의결[6)] 함에 따라 2021년 6월 국내 시행일 확정[7)] 및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공표(2021년 6월 10일)하였다.

이로써 국내 보험산업은 해외와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을 시행하게 된다.

---

4) 이장희·김동겸(2007)

5) IASB(2020)

6) 한국회계기준원(2021. 4. 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6. 10),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 1.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림 Ⅱ-1〉 IFRS17 진행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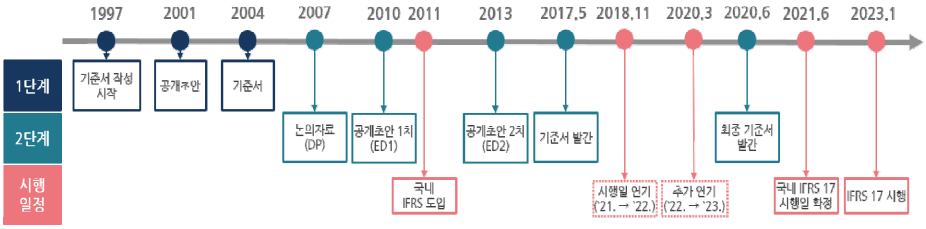

나. 국내 보험산업 준비 과정

국내 보험산업은 2013년 9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II) 도입준비단」을 구성[8]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다.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여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실무적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TF도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IFRS17 도입 관련 설명회가 최초로 개최(2014. 9. 19)되고 IFRS17 영향평가(2013년 말 기준)도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4월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오던 도입준비단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개편[9]하였다. 확대·개편한 도입준비단은 제도 검토 외에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확산 및 보험회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험조정 및 할인율 연구용역 수행, 학회와 연계한 세미나 개최, 영향평가 방법론 및 해설서 작성, IFRS17 기초과정에 대한 대면 및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개설 등 IFRS17을 도입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더불어 신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논의도 시작[10]된 시기였다.

2017년 3월에는 당국과 보험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주요 감독제도 추진방향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가 발족[11]되었다. 이 시기

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9. 24),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II) 도입준비단」 구성"

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30),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10) 금융감독원 IFRS4 2단계 도입준비 TF(2015. 12. 21),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 회계 운영방향",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과 대응 컨퍼런스

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3. 8),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에는 공동위원장으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생명·손해보험회사 협회장을 포함하고 업계 자문단에 보험회사 CEO를 참여시키는 등 신제도에 대해 업계가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해 현행 LAT 및 RBC제도를 개선하고 감독회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LAT 제도의 할인율 평가방법을 IFRS17과 유사하게 변경하였다. RBC제도에서는 금리위험액 잔존만기 구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계약만기까지 산출하는 IFRS17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회사 간 재무제표 구성항목 일원화, 보유계약 공정가치평가 반영, 원칙중심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 등 감독회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2018년 11월이 되어서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이 구성[12]되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간 운영되어 온 도입준비위원회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예금보험공사 등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공동재보험 제도, RBC 금리위험액에 금리파생상품 반영,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 등 자본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었다. 또한 법규개정을 위한 추진단[13]을 구성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전반에 걸쳐 IFRS17과 연관된 법규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준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14]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이 시행되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가 정비되고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파생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한도 폐지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관리 수단이 확충되었다.

---

1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1. 2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1. 30), "'23년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2. 28),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2.12.28) 통과 –"

〈표 Ⅱ-2〉 국내 보험산업 IFRS17 준비과정

구분	주요 내용
태동기 (2013년 9월)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준비단 구성 - (단장)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 IFRS 전담 TF 조직, 설명회 및 영향평가 최초 시행
성장기 (2015년 4월)	• 도입준비단 확대 개편 - (공동단장) 금융위원회 국장,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 제도 검토, 연구 용역, 세미나, 해설서,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 개설 등
도약기 (2017년 3월)	• 민·관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 (공동위원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명·손해보험회사 협회장 - 제도 연착륙을 위한 LAT 및 RBC 개선,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 제시 등
제도 완성기 (2018년 11월)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법규개정추진단 구성 및 법규 개정안 제시, 자본관리를 위한 공동재보험, 재무건전성준비금 도입 등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9. 24),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II) 도입준비단」 구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30),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 연착륙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3. 8.),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1. 2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 주요 내용

가. 재무제표 표시

1) 개요

IFRS17과 IFRS4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時價平價)와 발생주의에 기반을 둔 수익인식 기준 변경이다. IFRS17은 부채 시가평가를 위해 평가시점에 가정을 재산출하며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미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의 평균값으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한 순 유출액으로 산출한다. 현금유출액은 보험금, 직접사업비 등이 포함되고 현금유입액은 보험료가 해당된다. 할인율은 이러한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험계약기간이 장기일수록 할인율이 미래현금흐름 규모

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위험조정은 현행 정보로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부채이다.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을 합쳐서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s)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은 보험계약에 대한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향후 점진적인 이익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 이익을 일단 보험부채로 평가하고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IFRS4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Ⅱ-3〉 요소별 특징

구분	특징
미래현금흐름	• 보험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된 현금흐름의 순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으로 평균값으로 산출함 - 현금유출: 보험금, 직접 신계약비 등 - 현금유입: 보험료
할인율	• 미래현금흐름의 시간가치로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 조정하여 산출
위험조정(RA)	• 미래현금흐름 추정의 불확실성을 보완
보험계약마진(CSM)	• 보험계약 장래이익의 현가로 향후 점진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IFRS17은 구체적인 산출방법 없이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감독회계에서 비교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의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조정은 보험위험으로 한정되며 신뢰수준 75%를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다. 할인율은 감독당국이 직접 산출한 할인율 곡선을 감독당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은 경과연도별 수익인식 금액에 대한 산식을 제공한다.

$$\text{보험계약마진 수익인식}_t = \text{보험계약마진}_t \times \frac{\text{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sum_{k=0}^{n-k} \text{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_{t+k}},$$

$$(n = \text{잔여현금흐름 프로젝션 기간})$$

이 산식을 살펴보면 보험계약마진을 서비스제공량[15]에 비례하여 인식하므로 보험계약 기간별 유지자 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보험계약기간이 장기라면 기간경과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자 수가 감소하므로 서비스제공량도 초기에는 많지만 기간경과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초기에 보험계약마진 상각액이 많고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되는 형태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IFRS4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후 판매비 집행 등으로 인해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IFRS17은 초기부터 이익을 인식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계약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2〉 이익인식 방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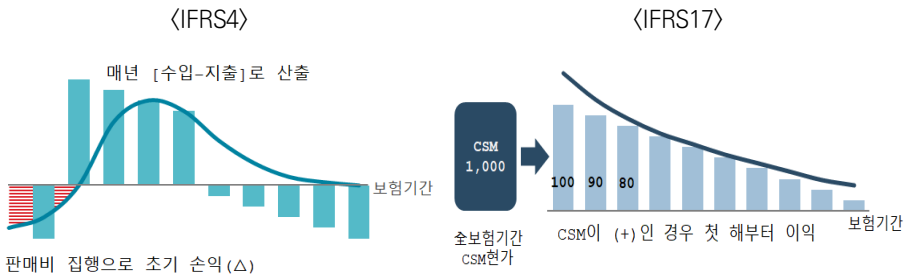

한편 최초 인식 시 이행현금흐름의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를 '손실부담계약'이라고 하며 이익이 발생하는 계약과 구분하여 평가한다. 즉,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순유출금액은 손실로 즉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현금유출 현재가치가 7,500원이고 위험조정이 1,000원인 경우 현금유입(보험료)이 10,000원이라면 보험계약마진은 1,500원(=10,000원-7,500원-1,000원)으로 이익계약이 되어 보험기간 동안 배분하여 이익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보험료가 8,000원이라면 △500원(=8,000원-7,500원-1,000원)이 되어 손실발생계약으로 인식한다. 즉, 500원은 손실금액으로 즉시 인식하며 이때 보험계약마진은 음수가 아닌 '0'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IFRS17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손실은 즉시 인식하는 반면 이익은 보험기간 동안 배분하여 인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표시된 보험부채를 이용하여 원천별로

15) 보험금 지급 등 보험보장서비스와 투자관련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계약서비스라고 함

이익을 나타낼 수 있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험부문과 투자부문으로 구분한 후 발생 원천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하며 보험이익의 경우 상품마진, 리스크마진, 예측마진으로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3〉 원천별 이익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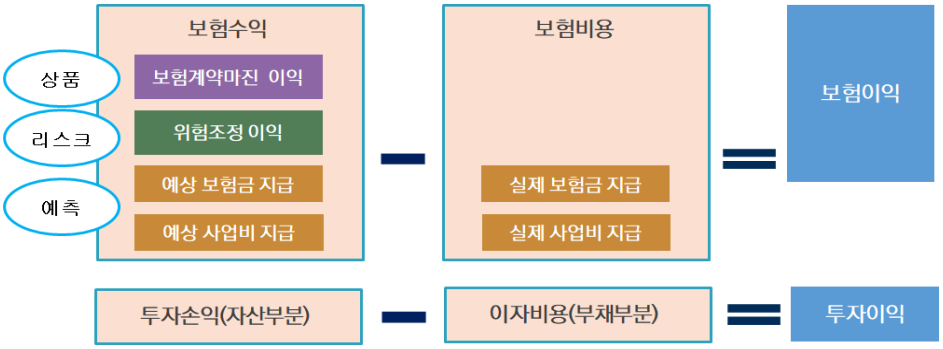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2021a)

이처럼 IFRS17은 IFRS4와 다르게 손익계산서에서 원천별 이익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16] IFRS4는 ① 영업보험료가 보험 관련 수익이지만, IFRS17은 ② 보험수익에서 보험료가 삭제되고 보험금, 사업비, 보험계약마진 등에 기반을 두어 수익을 인식한다. 보험금과 사업비 등에서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면 보험계약마진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이익 인식이 가능하다. ③ 또한 보험관련비용으로 분류된 준비금 전입액의 부채 이자비용이 IFRS17에서는 투자비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④ 보험이익과 투자이익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익별 원천을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 노건엽 외 3인(2022)

〈그림 Ⅱ-4〉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IFRS4, IFRS17)

IFRS 4	
Ⅰ. 보험관련수익	**500**
1. 보험료수익	500
Ⅱ. 보험관련비용	**410**
1. 지급보험금	300
- 사고보험금	100
- 중도급부금	200
2. 직접유지비	5
3. 신계약비 상각	40
4. 준비금 전입액*	65
Ⅲ. 보험관련이익	**90**
Ⅳ. 투자이익	**20**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5
Ⅴ. 영업이익	**110**

IFRS 17	
Ⅰ. 보험수익	**200**
1. 예상 사고보험금, 예상 직접유지비	105
2. 예상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보험계약마진, 위험조정	80
Ⅱ. 보험비용	**120**
1. 실제 사고보험금, 실제 직접유지비	105
2. 실제 직접신계약비 배분	15
3. 간접사업비	0
Ⅲ. 보험이익	**80**
Ⅳ. 투자이익	**5**
1. 투자수익	25
2. 투자비용 (부채이자비용 등)	20
Ⅴ. 영업이익	**85**

① ② ③ ④

* 준비금 증감(50) + 부채이자비용(15)

또한 최초 인식 이후 보험회사는 후속적으로 이행현금흐름을 재평가해야 한다.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에 의해 미래현금흐름, 위험조정이 변동하여 보험계약마진이 조정된다. 보험계약마진 조정 시 이자비용은 최초 인식 시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 때 할인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만 인식하거나 포트폴리오별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구분하여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할인율 변동효과를 OCI로 인식하면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Ⅱ-5〉 후속 측정 시 손익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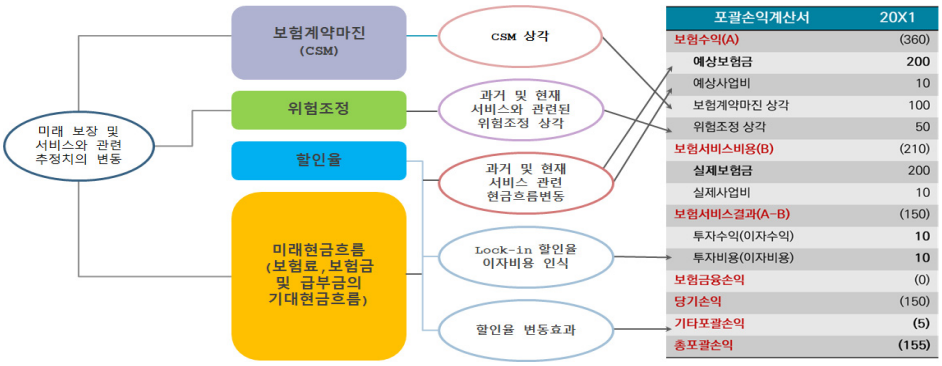

자료: 회계기준원(2019)

2) 예시

재무상태표의 경우 고금리확정형 보험상품 판매가 많은 회사를 가정하여 작성하였다.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연신계약비,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현금흐름과 관련 있는 항목은 자산에서 보험부채로 포함된다. 또한 할인율 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이 대폭 감소(70 → △20)하였다.

〈표 Ⅱ-4〉 재무상태표 비교 예시

〈IFRS4〉			〈IFRS17〉	
자산	**650**	⇒ △40[1]	**자산**	**610**
1. 금융자산	600		1. 금융자산	590
2. 유·무형자산	20		2. 유·무형자산	20
3. 이연신계약비	30			
부채	**580**	⇒ +50[2]	**부채**	**630**
1. 보험부채	560		1. 보험부채	630
2. 계약자 지분조정	20			
자본	**70**	⇒ △90[3]	**자본**	**△20**
1. 자본금·자본잉여금 등	10		1. 자본금·자본잉여금 등	10
2. 이익잉여금	50		2. 이익잉여금	5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0

주: 1) 자산 감소(40)는 신계약비(-30), 보험계약대출(-10)의 보험부채 차감요소로 조정함
2) 부채 증가(50)는 신계약비(-30), 보험계약대출(-10), 계약자지분(-20), 부채시가 평가(+110)
3) 자본 감소(90)은 부채시가 평가(-110)와 계약자지분의 자본(+20)으로 조정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손익계산서의 경우 보험수익은 급격히 감소하나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보험수익은 투자요소(저축보험료 등)가 반영되지 않아 감소(80 → 30)하였으나 보험비용에서 준비금 전입액이 투자비용으로 변경되어 보험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이익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큰 차이가 없어 이익원천별 손익을 IFRS17에서는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Ⅱ-5〉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예시

〈IFRS4〉			〈IFRS17〉	
보험수익	**80**	⇒ △50	**보험수익**	**30**
1. 수입보험료	80		1. 예상보험금	15
			2. 예상직접사업비	5
			3. 위험조정 변동	2
			4. 보험계약마진 상각	8
보험비용	**110**		**보험비용**	**20**
1. 지급보험금	60		1. 실제보험금	15
2. 사업비	10		2. 실제직접사업비	5
3. 준비금 전입	40			
보험이익	**△30**	⇒ +40	**보험이익**	**10**
투자수익	60		투자수익	60
투자비용	10		투자비용	45
투자이익	**50**	⇒ △35	**투자이익**	**15**
영업이익	20	⇒ +5[1)]	영업이익	25

주: 1) 예정이율에 기초한 준비금 전입(40)이 시장금리에 의한 이자비용(35)으로 변경되어 이익이 발생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보험이익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비교를 위해 보험료 매년 100, 2년납, 보험기간 4년의 보장성보험계약을 가정하였으며 단순화를 위해 예상과 실제 차이 및 위험조정과 할인율이 없음을 가정하였다. IFRS4에서는 보험료 납입기간(2년) 동안 보험이익이 발생하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IFRS17에서는 보험계약마진 상각액만큼 매년 일정하게 이익이 발생하여 예상과 실제가 동일하다면 보험이익이 일정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Ⅱ-6〉 보험이익 회계처리 사례 비교

IFRS4				
P/L	1Y	2Y	3Y	4Y
보험수익	**100**	**100**	**-**	**-**
보험비용	**30**	**40**	**40**	**50**
(사고보험금)	-	10	30	40
(신계약비)	20	20	-	-
(유지비)	10	10	10	10
보험이익	**70**	**60**	**△40**	**△50**

IFRS17				
P/L	1Y	2Y	3Y	4Y
보험수익	**30**	**40**	**60**	**70**
(예상보험금)	-	10	30	40
(예상직접비)	20	20	20	20
(보험계약마진상각)[1]	10	10	10	10
보험비용	**20**	**30**	**50**	**60**
(실제보험금)	-	10	30	40
(실제직접비)	20	20	20	20
- 신계약비[2]	10	10	10	10
- 유지비	10	10	10	10
보험이익	**10**	**10**	**10**	**10**

주: 1) 보험계약마진(40) = 수입보험료(200) - 사고보험금(80) - 신계약비(40) - 유지비(40)
2) 계약체결시점에 40 지급하나 보험기간 동안 상각함
자료: 금융감독원(2021a)

나. 전환 시 회계처리

IFRS17 도입 시 신계약은 평가일 가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보유계약은 전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최초 적용일이 2023년 1월 1일이므로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 직전연도인 2022년 1월 1일이 된다. 전환방법으로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완전소급법은 IFRS17을 최초부터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 집합을 식별·인식·측정해야 한다. 즉, 최초 인식시점의 자료와 가정이 모두 필요하므로 발행연도가 오래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완전소급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한다. 수정초안(ED2)에서는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었으나 기준서 발간 시(2017년 5월) 완전소급법 적용이 어렵다면 수정소급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그림 Ⅱ-6〉 전환 시 부채평가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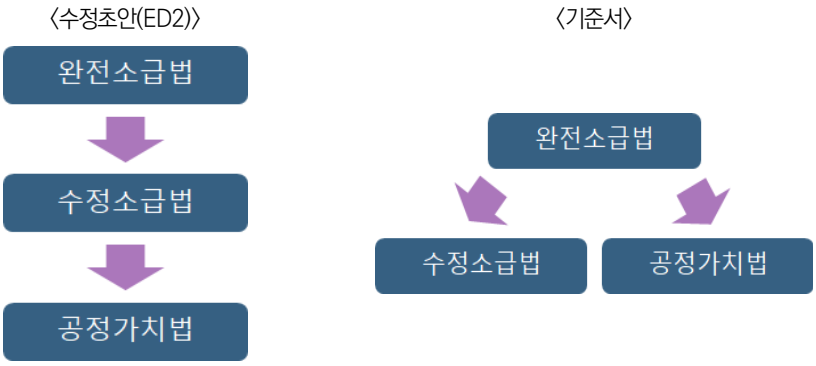

수정소급법은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사용되었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이용하여 완전소급법에 가장 근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전환일 기준으로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고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을 추정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미래 현금흐름은 실제 발생한 과거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추정한다. 할인율은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 관찰 가능한 수익률곡선을 활용하고, 관찰가능한 수익률곡선이 없다면 최소 3년간 평균 스프레드를 산정하여 할인율을 추정한다. 위험조정의 경우 전환일의 위험조정값에서 전환일 이전에 상각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조정한다.

공정가치법은 실제 시장에서 계약이 이전되거나 사업을 결합할 때 부채 이전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시가(Exit value)의 측정방법으로 전환일 보험계약집합의 공정 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보험계약마진을 산출한다. 보험계약의 공정 가치는 IFRS13에 의거하여 평가[17]하므로 IFRS17과 달리 할인율에 신용위험인 보험계약의 불이행효과를 반영하며 위험마진은 신뢰수준법이 아닌 자본비용법을 적용한다.[18] 현행추정부채와 미래현금흐름의 규모가 유사하고 위험마진과 위험조정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험계약마진 규모가 완전소급법 및 수정소급법에 비해 작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부채 축소로 인해 자본은 증가할 수 있으나 기대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이 축소되어 향후 이익이 감소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17) K-IFRS 제1117호 BC 385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음

18) 공정가치법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4]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그림 Ⅱ-7〉 공정가치법

감독회계에서는 비교가능성을 위해 소급법의 소급기간을 전환일(2022. 1. 1) 기준 직전 3~5년(2017년)으로 기간을 제한하였으며 직전 1~2년 소급법을 적용하거나 전 기간 공정가치법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적용일(2023. 1. 1)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3. 설문 조사

가. 개요

IFRS17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험회사에서 IFRS17을 담당하는 실무전문가와 면담하였으며 생명보험회사 6개사, 손해보험회사 6개사를 대상으로 총 12개사에 대해 진행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대형 3개사, 중·소형 3개사이며 손해보험회사는 대형 4개사, 중·소형 2개사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문 조사는 크게 ① 조직 및 시스템 ② 이익 및 자본 ③ 영업정책 ④ 지배구조 ⑤ 향후 변화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질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직 및 시스템은 IFRS17 부서의 기능상 구분과 형식상 구분 등을 질문하고 현재 시스템 구축단계를 확인하였다.

이익 및 자본은 IFRS4 대비 IFRS17의 수익, 이익, 자본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이익 증가

나 자본 감소 완화를 위해 회사가 임의적 또는 재량적으로 가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더불어 IFRS9 도입에 따른 투자이익 관리 방안도 논의하였다.

영업정책은 영업관리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의 활용 가능성과 평가 방법을 알아보고 보장성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상품 판매 전략을 확인하였다.

지배구조는 이익 및 자본관리와 가정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 현황과 관련 위원회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IFRS17 도입에 따른 영업전략 및 관리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질문하고, 제도 개선 사항과 감독정책 및 감독문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Ⅱ-7〉 설문조사 항목

분류	구분	질문
조직 및 시스템	조직 구성	• IFRS17 관련 부서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구축단계	• 현재 IFRS17 시스템 구축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 및 자본	규모 변화와 변동성	• 현행 대비 예상되는 수익, 이익, 자본의 규모 변화와 변동성은 어떻게 됩니까(소급법 적용기간 등)?
	재량적 조정 여부	• IFRS17에서 재량적으로 손익과 자본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투자이익 관리	• 보험이익 말고 IFRS9 도입에 따라 투자이익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영업정책	보험영업 관리지표	• 현재 보험영업 관리지표(초회보험료 등)는 어떻게 되며 향후 보험영업 관리 지표가 어떻게 바뀔 예정입니까? CSM 또는 CSM 일부 조정하여 대체되는지, EV는 계속 유지될까요?
	보장성 위주 영업	• IFRS17 시행 이후에도 현재와 유사하게 보장성(종신, 건강보험) 보험 중심의 치열한 경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축성보험 판매	• 연금 및 양로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배구조	이익 및 자본관리	• 자산운용까지 고려한 통합적 손익·자본관리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준비 및 역할은 강화하였습니까?
	가정관리	• 가정관리의 객관성,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거버넌스가 준비되었습니까?
향후 변화	IFRS17 시행 이후 달라질 점	• 현재와 비교할 때 IFRS17 시행 이후 크게 달라질 것(관리·영업전략·문화·거버넌스 등)은 무엇입니까?
	제도 개선	• 보험회사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감독정책이나 감독문화 변화	•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 정책이나 문화가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 주요 내용

1) IFRS17 조직 구성

12개사 모두 IFRS17 부서의 기능은 크게 가정파트, 모델파트 그리고 결산파트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은 구분되나 가정과 모델파트는 같은 팀으로 구성하고 결산파트는 다른 팀으로 운영하는 등 회사별로 실제 조직 운영은 다양하다. 한편, 가정파트의 경우 1개사는 계리 관련 부서가 아닌 기획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 경영활동과 연계함을 알 수 있다.

담당 임원을 살펴보면 12개사 중 10개사는 계리임원이 IFRS17 부서를 관리하나 2개사는 재무임원(CFO)이 직접 관리한다. 또한, 12개사 중 4개사는 계리임원이 리스크관리임원(CRO)을 겸직하고 있어 IFRS17과 K-ICS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별로 담당 임원, 조직 구성, 파트 세분화 등이 다양하여 일관된 조직 구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IFRS17 도입에 따라 현재 IFRS4를 담당하는 부서는 IFRS17 부서에 흡수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개사는 별도 부서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IFRS17 결산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므로 제도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 Ⅱ-8〉 IFRS17 부서 구성 예시

2) 시스템 구축 단계

12개사 모두 IFRS17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진행 중이다. 전환 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범운영을 진행 중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주로 월별로 결산하며, 손해보험회사는 분기별 결산을 진행 중이다. 또한 회계법인과의 사전감사를 통해 가정 및 모델링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IFRS17 기준 재무제표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생명보험회사 대형 1개사는 절대적인 보유계약 수가 많아 물리적인 연산시간이 오래 걸려 손익 및 자본 등 결산결과를 경영에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였다.

3) 이익 및 자본의 변화

전환 시 보유계약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모든 회사가 소급법 적용을 선택하였다.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3년 소급법을 적용하며 손해보험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5년 소급법을 적용한다. 자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급법을 적용한 것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부채증가에 따른 자본감소 부담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고금리계약이 많은 생명보험회사 대형사들도 모두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해보험회사의 소급기간이 생명보험회사보다 길어 IFRS17 도입 시 상대적으로 자본 부담이 크지 않고 향후 이익증가율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년 소급법을 적용하는 생명보험회사 1개사는 자본부담보다는 IFRS17 시스템 개시일정으로 인해 소급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표 Ⅱ-8〉 전환 시 회계처리

(단위: 개)

구분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소급법	3년(4), 2년(1), 1년(1)	5년(4), 4년 (2)

4) 이익 및 자본의 재량적 조정 여부

IFRS17은 원칙론적 부채평가 방식이므로 평가 가정에 따라 이익 및 자본의 변동성이 증가한다. 이익 증가나 자본 감소 완화를 위해 회사가 임의적 또는 재량적으로 가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12개사 회사 모두가 재량적으로 이익 및 자본 조정 여지는 크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경영자 행동, 장기 유지율 등 일부 가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가정의 일관성, 객관성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재량적인 조정 여부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보유계약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 담보 또는 계약자 행동 옵션에서, 기존 상품들의 가정을 준용하여 CSM이 크게 계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을 활용하여 초기 이익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산출된 CSM을 통해 초기에 이익을 인식하고 이후 가정 악화로 CSM이 크게 감소하거나 손상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투자이익 관리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는 IFRS17과 동시에 IFRS9을 시행함에 따라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변동되어 투자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9개사는 수익증권 비중 축소, 주식형에서 대출채권형 수익증권으로 변경,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 등을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려고 한다. 반면 중·소형사인 2개사는 수익증권 비중 축소보다는 비중을 유지하면서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감내한다고 답변하였다. 중·소형사가 변동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전략의 차이를 알 수 있다.

6) 보험영업 관리 지표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보험영업관리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12개사 중 11개사가 동의하였다. 손해보험회사 1개사는 CSM과 유사한 회사 자체 기준(MV)을 적용한다.

보험계약마진을 현재의 보험영업 관리 지표인 초회보험료, 유지율 등에 추가하여 사용하나 반영 비중과 반영 방법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11개사는 현행 지표는 유지한 채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하나 1개사는 보험계약마진만을 영업관리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나 현재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위험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금리위험 등 경제적 가정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할인율을 현재보다 낮게 산출하여 평가하거나 위험조정 산출 시 신뢰수준법이 아닌 자본비용법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Ⅱ-9〉 '보험계약마진'과 '조정 보험계약마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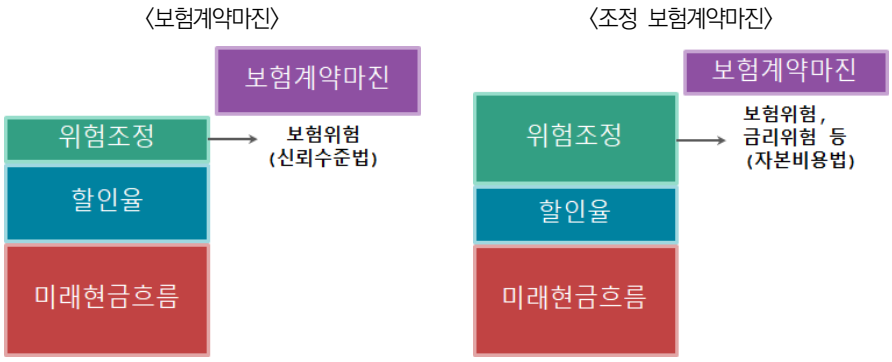

즉, 보험계약마진에서 금리위험 등을 조정한 '조정 보험계약마진(조정 CSM)'을 12개사 중 8개사가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보험계약마진 값 자체뿐만 아니라 미래 이익 확보를 위해 보험계약마진 증가율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Ⅱ-9〉 향후 관리지표

(단위: 개)

구분	CSM	조정 CSM	기타
보험회사 수	생명보험회사(2), 손해보험회사(1)	생명보험회사(4), 손해보험회사(4)	손해보험회사(1)

한편, 현재 보험회사의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내재가치(EV) 평가를 보험계약마진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별도로 계속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11개사가 검토 중이다. 11개사 중 3개

사는 별도로 산출하는 방안을 선호하나 8개사는 '조정 CSM'과 통합하는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7) 보장성 위주의 보험영업

IFRS17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가 될 것으로 12개사 모두 예상한다.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건강보험 위주 경쟁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업비차익 및 특약 등에서 이익이 주로 발생한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보험은 인보험, 물보험, 실손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인보험 위주 판매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에서 손실부담계약으로 발생되는 것은 주로 질병통원담보(백내장, 갑상샘 등)이며 상해담보에서는 손실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당기손익 확보를 위해 보장성보험 위주로 시장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2개사는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도 여전히 경쟁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생명보험회사 1개사는 변액보험보다는 건강보험(암, 치매 등)의 보험계약마진이 높아 이러한 상품 위주로 판매를 하지만 손해보험회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8)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

저축성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외에는 저축성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상황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관심이 있는 상품이다.

생명보험회사 3개사는 연금 및 저축 보험은 보험계약마진이 낮아 금리리스크 관리, 자산운용, 위험률 관리 등의 목적으로 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자산듀레이션에 비해 부채듀레이션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종신보험 대비 부채듀레이션이 짧은 연금 및 저축 보험을 판매할 유인이 있다. 현재와 같이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현금유입을 발생시켜 금리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의 사망리스크와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는 서로 위험을 상계(Natural hedge)할 수 있어 종신보험 판매가 증가한다면 연금보험도 일정 부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1개사는 저축성보험은 사차 및 비차마진이 거의 없고 이차마진밖에 없는 상품으로 자본비용 고려 시 자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므로 판매유인이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규제(납입완료시점 환급률 100% 이상)로 인해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사업비, 공시이율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9) 이익 및 자본관리 시스템과 거버넌스 준비

12개사 모두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으며 주로 ALM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자산운용까지 고려한 통합적 손익 및 자본관리 시스템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생명보험회사 1개사가 ALM 시스템에 IFRS17에 따른 자산운용(Replicating portfolio) 방식까지 고려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10) 가정관리 시스템과 거버넌스 준비

모든 회사가 가정 산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사 중 11개사는 '가정관리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가정관리위원회는 회사별로 명칭은 다르나 가정 변동, 모델방법론 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12개사 중 11개사는 가정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1개사는 리스크관리 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가정 관련 사항을 논의하여 별도 가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11) IFRS17 시행 이후 달라질 점

12개사 중 10개사가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영업전략 및 관리문화 등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개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회사는 이미 장기 인보험 위주로 시장이 변화하여 현재와 유사하게 매출경쟁이 심화되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다만 수익성 높은 상품에 대한 매출경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변화를 예상하는 회사들은 가정이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한 보험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손해율, 유지율, 사업비 집행률 등 경영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적으

로는 시가 평가 영향으로 금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LM이 경영관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보험계약마진 자체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마진의 성장성도 중요하므로 보험계약마진 중심의 영업을 강조하였다. 즉, 보유계약 CSM뿐만 아니라 신계약 CSM의 변화율도 중요하다. 다만,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전사적인 영업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보험계약마진으로 인해 회사 내 소통하는 용어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이익발생원천을 계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12) 제도 개선

5개사는 전환시점(2022년 초)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 보험산업에서 우려한 자본 부족 사태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금리 등 경제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리 수단 확보 차원에서 계약이전, 계약 재매입, 공동재보험 등 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개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도입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축소 이슈를 제기하였고, 다른 1개사는 투자손익 배분에서 투자연도별 구분방식, 계약자배당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1개사는 현재 할인율 수준이 높아 보험계약마진이 과대 계상되고 이후 할인율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축소로 인해 자본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최대관찰만기 증가 등을 통한 할인율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외 계리적 가정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손해보험회사 특별계정에서 장기보험 저축보험료 외에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3) 감독정책이나 감독문화 변화 필요성

12개사 모두 감독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잦은 규정 변경은 대외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사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컨설팅 중심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교가능성을 위해 업계 공통의 실무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8개사가 제시하였다. 이

러한 실무표준은 일관성은 유지하되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기준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1개사는 감독당국이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회사가 원칙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개사는 IFRS17 도입으로 오히려 과도한 영업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1차년도 수수료 한도만 존재하고 이후 연도의 통제는 없으며 업계 자율의 자정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소결

IFRS17은 기준서 작성(1997년)부터 시행(2023년)까지 25년간 진행된 초장기프로젝트로써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에 해당하는 IFRS4는 각국의 회계 관행을 허용하나 2단계인 IFRS17은 보험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 보험산업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2013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TF를 구성하여 10년에 걸쳐 준비하였다. 201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시작으로 2015년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고 2017년 「민·관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에서 제도 연착륙 방안 등을 도입한 후 2018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보험업법 등 법규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IFRS17은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와 수익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는 것이 IFRS4와의 차이점이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해 평가시점에 가정을 재산출하며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으로 구분한다. 이중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에 대한 미실현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향후 점진적으로 이익으로 전환된다.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 이익을 일단 보험부채로 평가하고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 도입 시 신계약은 평가일 가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나 보유계약은 전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 최초 적용일이 2023년 1월 1일이므로 전환일은 최초 적용

일 직전연도인 2022년 1월 1일이 된다. 전환방법으로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소급법에 비해 부채가 축소되어 자본은 증가할 수 있으나 기대 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이 축소되어 향후 이익이 감소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IFRS17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① 조직 및 시스템 ② 이익 및 자본 ③ 영업정책 ④ 지배구조 ⑤ 향후 변화로 구분된다.

조직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IFRS17 부서의 기능은 크게 가정파트, 모델파트 그리고 결산파트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은 구분되나 가정과 모델파트는 같은 팀으로 구성하고 결산파트는 다른 팀으로 운영하는 등 회사별로 실제 조직 운영은 다양하다.

이익 및 자본 변화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3년 소급법, 손해보험회사는 6개사 중 4개사가 5년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 회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자본부담은 크지 않고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영업 관리지표로 초회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계약마진을 추가하여 사용하나 반영비중과 반영방법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12개사 중 8개사는 보험계약마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금리위험 등을 반영한 '조정 보험계약마진'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위험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본비용법 등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영업정책은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가 될 것이며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이 더 높은 건강보험 위주의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이 낮은 연금 및 저축보험의 판매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 및 가정관리에 대한 지배구조는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가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ALM 시스템 및 가정관리시스템도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영업전략, 관리문화 등이 변화될 것이며 보험계약마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 유지율, 사업비율 등 경영효율지표가 관리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계약마진 중심으로 전사적인 영업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감독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컨설팅 중심의 검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업계 공통의 실무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2개사 중 8개사가 제안하였다. 한편 2개사는 IFRS17 도입으로 오히려 과도한 영업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차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차이 등 회사별 특징을 파악하고 싶었으나 '전환 시 회계처리 방법' 정도를 제외하고는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10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관리지표가 CSM으로 변화하고 이로 인해 생명·손해보험회사 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상품별 차이가 사라져 영업전략부터 자본관리까지 모든 부분이 유사하게 변화하였다. 즉, IFRS17로 인해 회사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CSM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